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보훈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집기관 구체화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 구체화
- 2) 모집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 마련

나. 모집방법 구체화(안 제3조)

- 1)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장부 기록 및 영수증 지급 의무를 규정함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도록 함

3)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4)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기부금품의 관리·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함

2)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④ 모집기관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모집한”을 “모집 또는 접수한”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를 “국가보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부금품”을 “기부금품 모집, 접수 및”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부금품의 관리) ①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실현된 경우
2.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 ----- ----- ----- -----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신 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 방법) <u>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모집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	제3조(모집 방법)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 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모집기관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령으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 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생략)

<신설>

<신설>

로 정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 모집 또는 접수한 -----

----- 국가보훈부령으로 -----

--.

② ----- 기부금품 모집, 접수 및 -----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의2(기부금품의 관리) ①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

<신 설>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실현된 경우

2.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618